

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

「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」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, 폐문 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6. 6. 23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장



1. 건 명: 사회적기업 육성법 위반(사업보고서 미제출)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공시송달
2. 근 거: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: 불임(공시송달자 명단)
4. 공고기간 : 2026. 6. 23. ~ 2026. 7. 7. (15일간)
5. 납부안내 :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6. 기타 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전형준(☎ 031-230-767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【붙임】

공시송달 명단

사업장명 (사업자등록번호)	대표자명 (소재지)	명칭	문서의 주요 내용				송달 불능 사유
			위반사항	조치내용	내용	기한	
사회적협동조합 경기도사회적경제기 업중*상사 (393-**-00290)	박*범 (수원시 영통구)	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	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제1항	과태료 사전통지	과태료 1,360,000원	2026. 2. 27.	폐문부재